

#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2009.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김 종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재 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	1
II. 경과 .....	1
III.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 .....	2
IV. 「정부안」의 문제점 .....	6
1. '무거운' 시험 .....	6
2. 법조의 주도 .....	8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취지의 몰각 .....	9
V.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의 핵심 요소 .....	10
1. '가벼운' 시험 .....	10
2. 교육 주체의 주도 .....	13
3.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의 명기 .....	14
VI.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	15
1. 제한의 필요성 .....	15
2.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 .....	16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분리의 필요성 .....	17
VII.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 .....	19
1. 예비시험제도 도입 불가 .....	19
2. 총입학정원 폐지의 필요성 .....	22
VIII. 국회 가결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평가 .....	24
IX. 맺음말 .....	26

<표1> 사법시험 합격자수 및 합격률 .....	28
<표2>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 .....	30
<표3> 사법연수생 연령구성 .....	31
<표4>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	32
<자료1>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 .....	43
<자료2>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	50
<자료3> 일본 「사법시험법」 .....	55
<자료4> 「변호사시험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	59

## I. 연구의 목적

-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의 기본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정의 방향과 내용 여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음.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 「변호사시험법」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 관철하는 것이 필요함.

## II. 경과

- 2004.12.31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sup>1)</sup>(이하 「건의문」)을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2007.5.28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안」 성안
- 2008.10.20 정부가 「변호사시험법안」<sup>2)</sup>(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 2008.10.2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수정안<sup>3)</sup>(이하 「협의회안」)을 발표
- 2008.11.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수정안<sup>4)</sup>(이하 「참여연대안」)을 발표
- 2008.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sup>5)</sup> 개최
- 2009.2.12 법사위가 수정된 「변호사시험법안」<sup>6)</sup>(이하 「법사위안1」)을 가결<sup>7)</sup>

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ng\\_status/1173540\\_9822.html](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ng_status/1173540_9822.html)).

2) 정부, 「변호사시험법안」, 2008.10.20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2008.10.24 (<http://www.leet.or.kr/>).

4) 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8.11.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24>).

5) 「제278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1호」, 2008.12.1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 rd/data2/278/pdf/278ba0021b.PDF#xml=/xml/123653692111271.xml>).

6)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0T2W0I1R5S1O6W4P2W8Z7O7)).

7) 「제28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9.2.1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 rd/data2/281/pdf/281ba0004b.PD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 rd/data2/281/pdf/281ba0004b.PDF)).

- 2009.2.12 「법사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재석인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sup>8)</sup>
- 2009.2.20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 2009.2.27 박선영 의원 등 21명이 「변호사시험법안」<sup>9)</sup>(이하 「박선영안」)을 발의
- 2009.3.5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구성
- 2009.3.17 강용석 의원 등 32인이 「변호사시험법안」<sup>10)</sup>(이하 「강용석안」)을 발의
- 2009.3.20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공청회 개최<sup>11)</sup>
- 2009.4.3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가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 의결
- 2009.4.22 법사위가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 의결
- 2009.4.23 법사위위원장이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sup>12)</sup>(이하 「법사위안2」) 제출
- 2009.4.27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본회의수정안<sup>13)</sup> 제출
- 2009.4.29 국회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등 78인 본회의수정안 부결 「법사위안2」 가결

### III.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

- 한국 ‘로스쿨’제도의 ‘기본설계도’로 기능해온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

8) 「제281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2009.2.1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za0006b.PD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za0006b.PDF)).

9) 박선영 외 21, 「변호사시험법안」, 2009.2.2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OX9K0S2Z2A7A1Y8P0B7A3C1X8K2Y7](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OX9K0S2Z2A7A1Y8P0B7A3C1X8K2Y7)).

10) 강용석 외 32, 「변호사시험법안」, 2009.3.1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OC9N0L3Y1B7W1W7I0M1Z3J2Q3T7W1](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OC9N0L3Y1B7W1W7I0M1Z3J2Q3T7W1)).

11) 「제281회국회(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호」, 2009.3.20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bad003b.PD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bad003b.PDF)).

12)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 2009.4.2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

13)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2009.4.2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

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현 제도”로는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게 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임.
-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을 최소한의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임. 다시 말해 교육은 ‘무겁게’ 만드는 대신 시험은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임. 사개위 「건의문」이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임.
- 물론 충족되어야 할 전제가 있음.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임. 그리고 실제로 이 점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므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매우 엄격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12 이하, 전임교원 최소 20인 이상, 전임교

원 중 실무경력교원 비율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 등의 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의무, 필수 개설 교과목의 지정 등 실로 엄격한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그 설치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서 교원에 관한 설치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하며, 2004년 4월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68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할 정도임.

- 게다가 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이루어진 인가과정에서 그 기준조차 더욱 엄격해졌음. 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는, 특성화,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20과목 이상 외국어 강좌 개설, 여성교수 및 교원 출신대학 다양성 확보, 전임교원 1.5명당 1명의 유급조교 확보, 전임교수 연구실적 5년간 800% 이상, 학생지도센터·육아시설의 설치, 20% 이상 전액장학생, 학생 1인당 실면적 12㎡, 전문도서관 열람석·서고공간·장서수·법학전문사서, 컴퓨터 Lab, 법률데이터베이스, 전용 기숙시설, 법조인 배출실적, 대학전체의 실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 등을 일일이 점수화하여 추가하고, 「시행령」의 필수 개설 과목을 필수 개설 필수과목으로, 전임교원 대 학생비율을 1:10으로, 실무경력교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더욱 강화시켜 놓았음<sup>14)</sup>. 그 ‘덕분’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러한 초호화판 기준을 초과달성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되어 있는 셈임.
-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총입학정원’이라는 특수한 통제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한국에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국 2,000등 이내’에 들지 않으면 안 됨. 그런 학생들을 모아 놓고 전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무거운’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14)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8.10.30.

-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인 법학교수는 한국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필요없다. 로스쿨 졸업으로 충분하다”라고 지적함. 그는 한국인들에게 “이미 총입학정원제도를 통하여 입학정원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음.<sup>15)</sup>
- 물론 엄격한 설치기준도 총입학정원도 ‘충실한 교육’의 충분조건은 아님. 하지만, 적어도 총입학정원이라는 높은 허들을 통과하여 전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됨. 그런데 그 입증은 없음.
- 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은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임.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점(點)’에서 법률가를 선발하던 제도로부터 ‘로스쿨’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시스템 속에서 법률가를 길러내는 제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함.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인가 - 교육 - 변호사시험 -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임. 그 구성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각각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임. 어느 하나의 요소가 돌출해서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는 것임.
- 위의 요소 중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임.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그리고 심지어는 “인가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이것 또한 ‘충실한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음.
- 위의 여러 요소들이 각각 적절하게 기능할 때 비로소 시스템으로서의 법

15)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국제 심포지엄]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2008.11.17, 99면.

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충실한 교육’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출발점임. ‘시험’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해오던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 몹시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챙기려면 품이 많이 들기도 함.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시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기 쉬움. 하지만 그래서 변화가 가져올 수 없음. 만일 그럴 요량이면 ‘로스쿨’을 굳이 도입할 필요도 없는 것임.

-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무거운’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로스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님. 변호사시험은 시스템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속에서 ‘가벼운’ 시험, 즉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

#### IV. 「정부안」의 문제점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는 ‘로스쿨’에 어울리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담겨있었음.
-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법안 부결 이후에도 충분히 주목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임.

##### 1. ‘무거운’ 시험

- 우선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무거운 시험이 되도록 되어 있었음.
  -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선택형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고, 논술형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1과목임.

- 언뜻 보면 현행 사법시험의 1차(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및 2차(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과목보다 과목수가 줄어든 듯이 보임.
- 하지만, 공법 뒤에는 “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 뒤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 뒤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라는 설명이 붙어있음(제9조).
- 게다가 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고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는 데 대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도록 되어 있음(제8조 제2항).

\* 시험과목 비교

	1차 / 선택형	2차 / 논술형
사법시험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정부안」	공법(헌법, <b>행정법</b> ), 민사법(민법, <b>상법, 민소법</b> ), 형사법(형법, <b>형소법</b> )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소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b>선택과목 1과목</b>

- 게다가 「법사위안」에서는 논술형시험에 “실무능력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제8조 제1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안」에 대해 설명한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실무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왜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음.
  -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연수교육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이 곧바로 부여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문서작성 등 실무형 과목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무관련 문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고 시험과목의 추가는 시험준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이라는 지적이 각 주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뿐임.<sup>16)</sup>

16)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15면.

## 2. 법조의 주도

- 「정부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조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 「정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다시 말해 합격자수의 결정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시험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임(제15조).
  - 그런데 그 위원장은 사실상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제14조 제2·3항).
  - 반면에 4명에 불과한 “법학교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필요도 없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을 받을 필요도 없이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14조 제3항).
  -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법무부가 발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는 다른 조문의 경우와는 달리 제14조에 대해서만은 왜 이러한 조문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음.
  - “외국의 입법례”로서 일본의 「사법시험법」의 관련 조문<sup>17)</sup>이 인용되어 있을 뿐인데, 그 조문에는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도 법조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음.<sup>18)</sup>
  
- 게다가 「법사위안」에서는, 판사·검사 위원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위원 15명 중 9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의 주도를 더욱 강화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가 제시한

17) 일본 「사법시험법」 제13조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들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8)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46면.

“수정이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라는 것이 전부임<sup>19)</sup>.

- 판사·검사 위원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위원 15명 중 9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음.

###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취지의 몰각

○ 만일 「정부안」이 가결되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았을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 치르지 않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 선택형 필기시험을 위한 공부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위한 공부의 부담 그리고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의 연속실시에 따른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됨으로써,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실을 떠나 고시학원을 찾는 학생들조차 생겨나게 되었을 것임.
- 또한, 그들은,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는 ‘법정 기술’을 뛰어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검사·변호사가 주도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정 기술’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들은 지금까지의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법률가의 숫자를 통제하려고 해왔다는 점에서도 「정부안」은 문제가 있음.

- 사개위에서 ‘로스쿨’ 숫자통제의 출발점인 총입학정원을 처음 제안하고<sup>20)</sup> 그것을 「건의문」 속에서 관철한 것은 대법원이었음. 대

19)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27면.

20) 대법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 2004.9.6 ([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g\\_status/1172658\\_9822.html](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g_status/1172658_9822.html)).

한변협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총입학정원을 1,200(~1,300)명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sup>21)</sup>.

- 「법률」 제정 이후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2007년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처음 보고한 “2009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 . . 단계적 ·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안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었으며, 게다가 “매년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증원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sup>22)</sup>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이 1차보고는 국회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10월 26일에 2차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1차보고에 대해 유일하게 “법조계”는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음.<sup>23)</sup>
- 이러한 경과를 되짚어볼 때, 법조가 주도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 거의 확실함. 이것이 변호사시험을 더욱 ‘무거운’ 시험으로 만들게 될 것임은 분명하며, 그 점에서도 「정부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음.

## V.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의 핵심 요소

### 1. ‘가벼운’ 시험

-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과목(헌법, 행정법,

21)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 2004.7.5 ;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004.9.20 ; 대한변협(오욱환),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法學專門大學院」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2005.4.21, 183면.

22)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 2007.10.17.

2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계속)」, 2008.10.26.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함.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와의 연계 등을 위해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본과목은 “복수의 법률분야를 융합하여 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안」과 같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sup>24)</sup>
- 또한 그러한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게 위해, 「참여연대안」과 같이 예를 들어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통합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안」의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음.

- 전국에서 2,000등 안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형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이에 관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넓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그 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sup>25)</sup> 하지만, 8지선다형이라는 ‘초고도의 선택기술’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과연 그러한 측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임.
-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 사법시험에서도 1차 객관식시험은 2차 주관식시험의 시험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해 채점해야 할 주관식시험 답안수를 최종 합격자수의 5배수 정도에 맞추기 위한 시험관리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임. 별첨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81년 이후 사법시험 출원자수, 응시자수 및 1차시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2차시험 합격률은 20% 전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임.

24)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29-30면.

25) 위의 자료, 26면.

-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그렇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음. 총 입학정원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채점해야 할 논술형 답안의 수가 최종 합격자수의 5배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임.<sup>26)</sup>
-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단답식시험은 합격 결정에는 1/5 밖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sup>27)</sup>
- 다만, 일본의 경우 합격자수를 법과대학원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합격률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 논문식시험의 채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는 함. 하지만, 한국은 총입학정원 ‘덕분’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 부담이 애당초 적으므로, 더더구나 선택형 필기시험의 설득력은 떨어짐.

○ 다음으로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도 필요하지 않음.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 필수과목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sup>28)</sup> 그 도입 이유가 제시되어 있음.
- 표현이 불명확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선택과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힘.
- 그런데 특성화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자 그대로 각각 ‘특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별첨 <표 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분야는 실로 다양함.
- 국제법무, 기업법무, 공익인권법무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특성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비록 특성화분야의 명칭은 같다고 하더라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26) 단, 합격률을 현저하게, 예를 들어 ‘총입학정원의 50% 이하’로 통제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면, 늦어도 시험 실시 4년째가 되면 채점해야 할 논술형 답안의 수가 최종 합격자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있다.

27) 後藤昭, 「助走距離とバーの高さは合っているか? - 日本の司法試験制度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국제 심포지엄』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2008.11.17, 19·25면.

28)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30면.

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요구됨.

- 따라서 ‘특성화’를 위해 선택과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과목의 수는 적어도 25개는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됨. 그런데 예를 들어 A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고, 그 시험문제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없음. 게다가 A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재학 중에 그 과목을 공부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임. 그렇다면 그 과목을 또 다시 국가시험으로 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임.
- 특성화와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그렇다면 그 선택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임. 그리고 그 결론은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큼. 「정부안」의 시험방법과 시험과목은 일본의 「사법시험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목도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임.
- 그런데 일본 신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은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중 수험자가 미리 선택하는 1과목”임.
- 만일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선택과목을 정하게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이들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큼.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음.<sup>29)</sup>

## 2. 교육 주체의 주도

---

29)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도 위의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시험 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로스쿨’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설치기준에서는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12 이하(실제로는 1:10 이하), 전임교원 최소 20인 이상인 데 대해, 일본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1:15 이하, 전임교원 최소 12명 이상이다. 실제로도 일본의 법과대학원 중에는 전임교원이 12인에서 15인 사이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한정하여 시험을 치게 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그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협의회안」(제13조) 혹은 「참여연대안」(제14조)과 같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혹은 그에 근접하는 수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신에 위원 중 법조의 비율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안」과 같이 법무부차관을 사실상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위원의 과반수를 법조로 채워할 이유도 없음.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애당초 판사·검사가 ‘변호사’시험에 관여해야 할 필연성이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후의 판사·검사 임용은 변호사시험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주관해온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사국가시험 등과 마찬가지로<sup>30)</sup> 시험 실시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3.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의 명기

- 「정부안」에는 빠져있는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 필요함.

---

30) 의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에 관한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이 관장한다.

- 사실 법무부가 주도한 「정부안」에 대한 의구심의 상당 부분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임.
  - 그리고 위의 III-3에서 적은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
  - 따라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 「협의회안」과 같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라고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제10조 제1항) 고려해볼 수 있음.
- 그 수준이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법학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임.
  - 그래도 왜 70%나 90%가 아니고 하필 80%인가라는 의문은 남을 수 있음.
  -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에게서 얻어야 함.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이라는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1차보고서에서이기 때문임.<sup>31)</sup>
- 「참여연대안」과 같이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제10조) 방법임. 다만, 그 경우에는, 역시 「참여연대안」과 같이, 합격점수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 합격점수가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VI.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 1. 제한의 필요성

- 장기간의 응시로 인해 국가적 인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1)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 2007.10.17. 연혁적으로 따지면 「법률」 제정 이전에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80%”를 처음 언급한 것은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004.9.20 참조.

응시기간 혹은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함.

-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는 단지 시험공부에만 매달렸던 ‘고시낭인’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법학전문석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자격 없이도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도 기간 혹은 횟수의 제한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다만, 그 제한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의사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90% 이상<sup>32)</sup>이 합격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혹은 일정 횟수 동안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 반대로 만에 하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응시기간 혹은 횟수의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임.

## 2.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

-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5년”의 기간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세 차례”로 횟수 제한까지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 당장 “매년 1회 이상”(제4조 제1항) 실시되는 시험을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하라고 하면, 나머지 적어도 2년 동안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됨.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이중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외에 “응시

32) 2008년 96.5%, 2009년 93.6%. <http://www.kuksiwon.or.kr/-시험정보-시험통계>.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sup>33)</sup>

-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면 응시인원이 누적된다고 해서 시험 합격률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기간의 제한으로 충분하며 횟수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응시제한은 기간이나 횟수 어느 하나의 제한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응시횟수보다는 응시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분리의 필요성

- 하지만, 기간만 제한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법시험이 변호사 시험과 병행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안」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경우(부칙 제3조 제2항), “5년 내에 세 차례”라고 하는 이중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임.<sup>34)</sup>
  - 사법시험 응시는 허용하면서 기간만 제한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들도 매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

33)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4면.

34) 위의 자료, 같은 면.

- ‘5년 내에 네 차례’나 ‘5년 내에 다섯 차례’가 되어도 곤란함. 변호사시험에 ‘두 차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들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당장 시험공부를 위해 강의실을 떠나겠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학생들이 자퇴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모를 편입학 소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생각될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5년 내에 세 차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하여금 사법시험 응시의 유혹을 ‘한 차례’ 이하로 억누르게 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수공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님.

○ 하지만, 그 교육지책은 어디까지나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기간에만, 「정부안」에 따를 경우 2017년까지만 설득력을 가짐.

- 게다가 그 기간 동안에도, 사법시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임.
- 문제는, 변호사시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임.

○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된 것임.
- 다시 말해 “새로운”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낡은 제도의 핵심인 사법시험제도와는 ‘다른’ 제도임.
- 그렇다면, 비록 과도기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시험에 의한 선발’과 21세기의 ‘교육에 의한 양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음.

- 「정부안」이,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 기간을 2017년까지로, 사개위 「건의문」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보다 4년이나 늘려 잡은 것도, 그럴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 그 점에서, 「협의회안」(제5조, 부칙 제4조)과 「참여연대안」(제5조, 부칙 제4조)처럼, “세 차례”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음.
  -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것임.
  -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총입학정원보다 더 ‘위헌적’이지는 않음.
- 다만, “세 차례”의 삭제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추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삭제만 하고 추가는 하지 않는다면, 최악이 될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들이 ‘마음놓고’ 사법시험도 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그보다는, 적어도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는 기간 동안은, 「정부안」의 “5년 내에 세 차례”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할 것임.

## VII.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

### 1. 예비시험제도 도입 불가

- 법안 부결 이후 일각에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지난 3월 4일에는 전국의 55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

학, 법학부, 법학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 협의회 준비모임이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sup>35)</sup>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 “예비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모순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sup>36)</sup>

○ 우선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지금까지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게 될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로스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에 다름 아님.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예비시험은 「박선영안」과 같이 “헌법, 민법, 형법, 영어”만으로 구성되는(부칙 제5조) ‘가벼운’ 시험이 될 수 없음.

-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려면,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 이 점은 일본의 예비시험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일본의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합격하면 법과대학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제4조 제1항), 그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구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부칙 제9조). 1차로 단답식시험(헌법 · 행정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형사

35) 「법과대 협의회 “법학도에게 예비시험 보장해야”, 『법률저널로스쿨』, 2009.3.6 ([http://www.newslaw.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1005210010&tblName=tblNews&pressNum=00521&pressDate=2009-03-06&photoYN=Y](http://www.newslaw.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1005210010&tblName=tblNews&pressNum=00521&pressDate=2009-03-06&photoYN=Y)).

36)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1면.

소송법·일반교양과목)을 실시하고, 단답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2차로 논문식시험(단답식 과목과 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하며, 논문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3차로 구술시험(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함(제5조).

- 이렇게 일본의 예비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데다,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과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를 판정”해야(제5조 제1항) 하기 때문임. 게다가 예비시험은 말하자면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이므로 그 합격자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sup>37)</sup>

○ 한국에서도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같은 어려운 시험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는 예비시험을 실시할 근거가 없으니 도입하더라도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임.
-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험이라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기 어려울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목과 방법은 사법시험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학부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교양과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3년간 배우는 기본법학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기초과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쌍방향·다방향의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구술시험도 치러져야 할 것임.

37) 일본의 예비시험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中西一裕, 「司法試験予備試験をめぐる諸問題」, 『法曹養成対策室報』 3호, 2008 (<http://www.nichibenren.or.jp/ja/publication/books/data/housou3-1.pdf>) 참조.

- 예비시험이 실시되면, 사법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과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공의 대학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며, 응시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도 기웃거리게 될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가지는 동안은 응시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혹은 응시횟수 제한을 통과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예비시험을 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으니 그들 또한 몰리게 될 것임.
- 시험과목과 방법은 사법시험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어디까지나 ‘우회로’인만큼 선발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률은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더 높을 것이며, 그 결과 ‘고시학원’은 지금보다 더 번창하게 될 것임.
- 만에 하나 시험과목과 방법을 더 약화시키고 선발인원을 늘려 잡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진학하더라도 굳이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며, 많은 비용만 치른 채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임.
-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낭인’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예비시험 낭인’문제를 낳게 될 것이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임.

## 2. 총입학정원 폐지의 필요성

-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자격자에게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는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로스쿨 총입학정원’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도입한 데 있음.
  - 국가가 총입학정원을 통제해서 그 이상은 절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총입학정원 때문에 대학들이 과열유치경쟁에 나섰고, 설치인가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도 훨씬 높아졌고, 그 결과 수업료마저 뛰어올라, 국민들의 로스쿨 입학 가능성, 다시 말해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설치인가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는 충분히 넓어질 수 있음.
  
- 그 위에 정부가 이미 약속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대여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로 근무하게 하는 공익변호사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임.
  - 예비시험 도입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인 지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한국사회는 변호사자격에 관한 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도 아님.
  - 별첨 <표 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연령은 만 30세 전후이므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활비, 책 값, 학원비 걱정 없이 시험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게다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임.

-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이미 더 유용함.
  - 모든 로스쿨은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sup>38)</sup>.
  - 그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는 법률가의 길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임.
  - 위에서 제시한 총입학정원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들의 꿈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임.
  
-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서, 원하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을 통한 양성’ 과정을 거쳐 우수한 법률가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함.
  
-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내세워 ‘교육을 통한 양성’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뿐,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보할 수 없는 것임.

## VIII. 국회 가결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평가

- 「정부안」의 부결 이후, 국회 법사위에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소위원회가 성안한 것을 법사위가 「법사위안2」로 가결하였고, 그것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마침내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음.

38)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7.10.30, 8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정원의 6%(125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4면.

○ 「법사위안2」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응시자격 :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제5조).

⇒ 다만, 2009. 4. 22. 법사위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로스쿨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응시 기간 및 횟수 : ●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며, 2009년도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산입함 (부칙 제4조).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선택형 필기시험은 ①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함. ●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하되,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두 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제10조).

○ 「법사위안2」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안」 부결 이후 사회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 ‘5년 내 3회’라고 하는 과도한 제한을 ‘5년 내 5회’로 완화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응시를 금지함으로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두 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제10조), 선택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법사위안2」에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선택형 필기시험을 폐지하지 않음.
-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도 「정부안」 그대로 유지함.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사위안1」에서와 같이,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의 비중이 과도하도록 함.

## XI. 맺음말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험을 쳐야만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을 쳐야만 공부를 한다’라는 낡은 ‘신화’를 버리는 것을 의미함.
- 그 낡은 ‘신화’를 버리는 것은 단지 법조의 과제만이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법조/비법조의 구별이 의미가 없게 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과제임. 바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게 됨.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그들이 법조의 주도 아래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맞추어 ‘합격률 1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생각만 한다면, 한국에서의 ‘로스쿨’ 정착은 그만큼 요원함. 반대로 그들이 ‘이것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이다’라고 변호사 자격의 핵심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에서 그 기본을 검정하도록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한다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만큼 빨리 정착되게 될 것임.

-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또 무책임하기도 함. 법률가의 양성은 법률가의 ‘자기재생산’임. 자기재생산을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면, 이미 생명체로서의 자격이 없을 터임.
- 또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함. 어떤 법률가를 가지는가는 곧 국가와 사회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 그래서 한국 ‘로스쿨’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변호사시험법」을 올바르게 제정·운영하는 것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과제인 것임.
- 많은 한계를 가지지만 「변호사시험법」이 일단 성립되었으므로, 그것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선택과목의 선정과 시험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사법시험과 구별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방법 개발, 다수의 모의시험의 실시, 로스쿨의 시험 출제와 채점을 포함한 학사운영을 변호사시험과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 등, 당장 착수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변호사시험의 질적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는 것이 요망됨.

<표 1> 사법시험 합격자수 및 합격률<sup>39)</sup>

연도	회수	출원자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최종 합격 자수	최종합 격률 (%)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1963	1	4,176(466)	3,450	1,471	42.64	2,115	41	1.94	41	0.98
1963	2	3,732(1,325)	2,318	1,205	51.98	2,530	45	1.78	45	1.21
1964	3	4,969(1,067)	3,770	781	20.72	1,848	10	0.54	10	0.20
1964	4	4,214(725)	3,251	461	14.18	1,186	22	1.85	22	0.52
1965	5	2,141	2,141	475	22.19	408	16	3.92	16	0.75
1966	6	2,370(423)	1,858	470	25.30	756	19	2.51	19	0.80
1967	7	2,820(430)	2,304	491	21.31	835	5	0.60	5	0.18
1967	8	2,466(161)	1,837	473	25.75	779	83	10.65	83	3.37
1968	9	2,599(396)	2,070	447	21.59	736	37	5.03	37	1.42
1969	10	2,363(372)	2,363	629	26.62	750	34	4.53	34	1.44
1970	11	2,561(511)	2,326	520	22.36	930	33	3.55	33	1.29
1970	12	2,786(408)	2,531	762	30.11	944	50	5.30	49	1.76
1971	13	2,776(709)	2,629	420	15.98	962	80	8.32	81	2.92
1972	14	3,514(377)	3,215	577	17.95	829	80	9.65	80	2.28
1973	15	4,072(503)	3,614	430	11.90	787	60	7.62	60	1.47
1974	16	4,010(376)	3,311	498	15.04	705	60	8.51	60	1.50
1975	17	4,119(452)	3,344	424	12.68	747	60	8.03	59	1.43
1976	18	4,498(376)	3,625	405	11.17	653	60	9.19	61	1.36
1977	19	4,119(452)	4,011	541	13.49	801	80	9.99	80	1.94
1978	20	5,387(488)	4,153	521	12.55	912	100	10.96	100	1.86
1979	21	5,788(479)	4,506	564	12.52	929	120	12.92	120	2.07
1980	22	6,658(502)	4,868	575	11.81	986	141	14.30	141	2.12
1981	23	7,983(523)	6,805	785	11.54	1,227	316	25.75	289	3.62
1982	24	9,272(663)	7,386	830	11.24	1,350	307	22.74	300	3.24
1983	25	9,785(723)	8,450	722	8.54	1,353	306	22.62	300	3.07
1984	26	11,600(621)	9,870	816	8.27	1,365	353	25.86	303	2.61
1985	27	11,743(706)	10,089	755	7.48	1,401	312	22.27	298	2.54
1986	28	13,635(688)	11,708	791	6.76	1,373	309	22.50	300	2.20
1987	29	14,252(711)	11,973	732	6.11	1,381	311	22.52	300	2.10
1988	30	13,568(677)	11,209	818	7.30	1,419	310	21.85	300	2.21
1989	31	13,429(773)	11,237	714	6.35	1,417	311	21.95	300	2.23
1990	32	14,365(676)	11,697	830	7.10	1,425	298	20.91	298	2.07
1991	33	15,540(771)	12,925	741	5.73	1,468	287	19.55	287	1.85
1992	34	16,424(707)	13,958	821	5.88	1,488	288	19.35	288	1.75
1993	35	18,232(759)	15,516	777	5.01	1,492	288	19.30	288	1.58
1994	36	19,006(730)	16,390	850	5.19	1,530	290	18.95	290	1.53
1995	37	20,737(803)	16,879	1,052	6.23	1,856	308	16.59	308	1.49
1996	38	22,771(1,012)	18,572	1,250	6.73	2,198	502	22.84	502	2.20
1997	39	20,551(1,166)	15,568	1,865	11.98	2,949	604	20.48	604	2.94
1998	40	20,755(1,765)	15,670	2,662	16.99	3,558	700	19.67	700	3.37
1999	41	22,964(1,786)	17,301	2,127	12.29	3,554	709	19.95	709	3.09
2000	42	23,249(2,001)	16,218	1,985	12.24	3,762	801	21.29	801	3.45
2001	43	27,625(2,351)	22,365	2,406	10.76	4,578	991	21.65	991	3.59
2002	44	30,024(2,368)	24,707	2,640	10.69	4,764	999	20.97	998	3.32
2003	45	30,146(2,658)	24,491	2,598	10.61	5,012	905	18.06	906	3.01
2004	46	18,894(2,576)	15,446	2,692	17.43	5,028	1,009	20.07	1,009	5.34
2005	47	21,585(2,395)	17,642	2,884	16.35	5,038	1,001	19.87	1,001	4.64
2006	48	21,210(2,575)	17,290	2,665	15.41	5,007	1,002	20.01	994	4.69
2007	49	23,430(2,398)	18,114	2,808	15.50	5,024	1,008	20.06	1,011 (6) <sup>40)</sup>	4.31
합계		574,913	466,971	53,756	11.51	94,145	16,061	17.06	15,911	2.77

39) 이 표는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 공개토론회(2003. 7. 25)결과보고서 -』(2003) 204면의 표 및 법무부 사법시험 사이트(<http://www.moj.go.kr/barexam/>)-자료실-통계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출원자수 중 괄호 안의 수는 1차시험 면제자수임. 단, 1965의 출원자수는 1차시험 면제자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임.

\*\* 최종합격률 = 최종합격자수 / 출원자수

---

40) 2007년 최종합격자수 중 괄호 안의 수는, 1981년 및 1982년에 시국관련 시위진력을 이유로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함으로써 추가합격한 사람들의 수이다.

<표 2>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sup>41)</sup>

대 학 명	정 원	특 성 화 분 야
강 원 대	40	환경
건 국 대	40	부동산관련법
경 북 대	120	IT법
경 희 대	60	글로벌 기업법무
고 려 대	120	GPL(국제법무)
동 아 대	80	국제상거래법
부 산 대	120	금융·해운통상
서 강 대	40	기업법(세부특성화: 금융법)
서 울 대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서울시립대	50	조세법
성균관대	120	기업법무
아 주 대	50	중소기업법무
연 세 대	12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영 남 대	70	공익·인권
원 광 대	60	의생명과학법
이화여대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인 하 대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전 남 대	120	공익인권법
전 북 대	80	동북아법
제 주 대	40	국제법무
중 앙 대	50	문화법
충 남 대	100	지적재산권
충 북 대	70	과학기술법
한국외대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한 양 대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b>25개교</b>	<b>2,000명</b>	

4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초안)」, 2009.3.

<표 3> 사법연수생 연령구성<sup>42)</sup>

입소 연도	기수	연 령 별 (입소당시 기준)				계	평균 연령
		24세 이하	25-27세	28-30세	31세 이상		
1983	14기	43	110	71	87	311	28.45
1984	15기	57	107	56	79	299	28.01
1985	16기	71	100	76	60	307	27.61
1986	17기	147	86	54	22	309	25.63
1987	18기	131	83	49	33	296	25.71
1988	19기	119	81	56	47	303	26.31
1989	20기	74	110	61	59	304	27.31
1990	21기	79(26.3)	105(35)	60(20)	56(18.7)	300	25.72
1991	22기	57(19.2)	127(42.8)	53(17.8)	60(20.2)	297	27.52
1992	23기	72(24.9)	94(32.5)	69(23.9)	54(18.7)	289	27.35
1993	24기	39(13.3)	92(31.4)	80(27.3)	82(27.9)	293	28.35
1994	25기	53(18.7)	101(35.6)	80(28.2)	50(17.6)	284	27.37
1995	26기	34(11.7)	95(32.7)	90(30.9)	72(24.7)	291	28.18
1996	27기	30( 9.5)	105(33.3)	100(37.7)	80(25.4)	315	28.48
1997	28기	39( 7.9)	143(28.8)	142(28.6)	172(34.7)	496	29.20
1998	29기	50(8.4)	151(25.5)	163(27.5)	228(38.5)	592	29.58
1999	30기	57(8.2)	200(28.8)	208(30)	226(33)	694	29.25
2000	31기	44(6.13)	217(30.26)	223(31.10)	233(32.51)	717	29.29
2001	32기	70(8.74)	219(27.34)	237(29.59)	275(34.33)	800	29.22
2002	33기	44(4.51)	210(21.51)	293(30.02)	429(43.96)	976	31.21
2003	34기	51(5.24)	239(24.59)	301(30.97)	381(39.20)	972	29.95
2004	35기					887	30.17
2005	36기					987	29.88

\*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42) 이 표는 2007년 2월 20일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http://jrti.scourt.go.kr/intro/situation.asp?flag=6>)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현재, 관련 자료는 위의 사이트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교수, 교직원, 법관만이 회원가입”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료실” 이외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표 4> 「변호사시험법안」 조문대비표

정부안 (2008.10.20)	법사위안 (2009.2.12)	박선영안 (2009.2.27)	협의회안 (2008.11.3)	참여연대안 (2008.11.3)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p> <p>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b>기초적인</b>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b>기본적인</b>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b>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b>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시험실시기관) ①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b>시행한다.</b> ② <b>법무부장관은 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b> ③ <b>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b></p> <p>제4조(좌동)</p>	<p>법률명 : 변호사<b>자격</b>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b>기초적인</b>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b>자격</b>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b>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b>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정부안과 동일)</p> <p>제4조(좌동)</p>

<p>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li> </ol>	<p>제5조(좌동)</p> <p>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금고 이상의 <b>실형(實刑)</b>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b>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li> <li>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b>아니한 사람</b></li> <li>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li> </ol>	<p>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b>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한다</b>).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제6조(좌동)</p>	<p>제5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5조(좌동)</p> <p>제6조(좌동)</p>
---	---	--	-------------------------------	-------------------------------

<p>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p> <p>1.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p>	<p>명된 사람</p> <p>제7조(좌동)</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좌동)</p>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b>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b> 실시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b>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b> 한다.</p> <p>1.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p>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b>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으로</b> 실시한다.</p> <p>② <b>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b></p> <p>③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b>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b></p> <p>제9조(시험과목) ① <b>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 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b></p>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b>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으로</b> 실시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b>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 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b></p>
--	---	--	---	--

<p>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p> <p>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p> <p>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p> <p>②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p> <p>1. 공법</p> <p>2. 민사법</p> <p>3. 형사법</p> <p>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p> <p>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p>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p>	<p>제10조(좌동)</p>	<p>의 과목을 말한다)</p> <p>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p> <p>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p> <p>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p>②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p>	<p>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p> <p>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②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한다.</p> <p>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p>	<p>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p> <p>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p>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 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p>
--	-----------------	--	--	---

<p>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p>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b>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b>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b>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p>	<p><b>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배점의 5할을, 합격점수는 전 과목 배점합계의 8할을 초과할 수 없다.</b></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정부안과 동일)</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p>	<p>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좌동)</p> <p><b>(정부안 제12조 삭제)</b></p> <p>제12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b>제1항의 출제를 담당하는 시험위원과 채점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겸할 수 없다.</b>  ③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p>	<p>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p> <p>④ <b>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b></p> <p>제11조(좌동)</p> <p>제12조(정부안과 동일)</p> <p>제13조(정부안과 동일)</p> <p>제14조(변호사<b>자격</b>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b>자격</b>시험</p>
---	--	---	--	--

<p>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무부차관</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명</li> <li>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li> <li>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li> <li>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li> <li>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li> </ol> </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p>	<p>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무부차관</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명</li> <li>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li> <li>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li> <li>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li> <li>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li> </ol> </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좌동)</p>	<p>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b>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b>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명</b></li> <li>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li> <li>3. <b>검찰총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b></li> <li>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b>위원이</b>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좌동)</p>	<p>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b>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p> <p>③ 위원은 <b>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7명</b></li> <li>2. <b>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b></li> <li>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li> <li>4. <b>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b></li> <li>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b>사람 2명</b> (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b>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b></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좌동)</p>	<p>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b>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p> <p>③ 위원은 <b>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6명</b></li> <li>2. <b>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b></li> <li>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li> <li>4. <b>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b></li> <li>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b>사람 3명</b> (<b>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b>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b>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b></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좌동)</p>
---	--	---	--	--

<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li> <li>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li> <li>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li> <li>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li> </ol> <p>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p>	<p>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b>법무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b>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7조(좌동)</p> <p>제18조(좌동)</p>	<p>제16조(정부안과 동일)</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b>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b>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b>정지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li> <li>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li> </ol> <p>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좌동)</p>	<p>제15조(좌동)</p> <p>제16조(좌동)</p> <p>제17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p>	<p>제16조(좌동)</p> <p>제17조(좌동)</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p>
--	--	---	--	--

<p>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b>법무부장관은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b></p> <p>제18조(좌동)</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b>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b></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	---	---	--	--

<p>「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p> <p>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좌동)</p> <p>제3조(사법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p> <p>제4조(좌동)</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5조(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총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그 최초입학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이 법에 따른 시험</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	--	---	---	---

<p>제4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p>	<p>제5조(좌동)</p>	<p>(이하 “변호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예비시험의 시험실시기관,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등은 이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사법시험법」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③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과목은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며,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예비시험의 합격 결정은 이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은 “예비시험”으로 보고, 법조윤리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은 “예비시험에 합격한”으로 본다.</p>	<p>제5조(좌동)</p>	<p>제5조 (좌동)</p>
---	----------------	---	----------------	-----------------

<p>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5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제6조(좌동)	제7조(좌동)	제6조 (좌동)	(정부안 제5조 삭제)
--	---------	---------	----------	--------------

## <자료 1>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

제출연월일 : 2009. 4.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제안경위

---

가. 2009년 2월 19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함.

나. 2009년 2월 20일, 3월 5일, 3월 20일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음.

다. 2009년 3월 20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2009년 2월 27일 박선영의원 및 2009년 3월 17일 강용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을 2009년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상정·심사함.

마. 2009년 4월 3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위 2가지 법률안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바. 2009년 4월 22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예비시험제도에 관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과 5년의 시험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2. 제안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 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안 제2조)

법조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

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

나. 시험실시기관 및 시행주기(안 제3조·제4조 및 부칙 제3조)

(1)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다년간의 사법시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석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함.

다. 응시자격(안 제5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2)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1)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마. 시험의 방법(안 제8조)

(1)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 및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필기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률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바. 시험과목(안 제9조)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될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사. 시험의 합격 결정(안 제10조)

(1)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함.

(2)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함.

(3)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는 과락제를 도입함.

(4)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자.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안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

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 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 <자료 2>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09. 4. 27.

발 의 자 : 강용석 등(78인)

### 수정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2009년 2월12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결과 가정형편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인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아니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되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19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고 제281회국회(임시회)·제28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제3차와 6차에 걸친 법조인력양성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9년 4월 22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그러나 이는 2009년 2월 12일 가정형편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된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안」의 조문의 골자에 수정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과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하되 예비시험부분만 추가한 변호사시험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예비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수정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안 제2조)

법조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예비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

나. 시험실시기관 및 시행주기(안 제3조·제4조 및 부칙 제3조)

(1)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다년간의 사법시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및 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 및 예비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석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함.

(3) 최초의 예비시험은 사법시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법시험이 종료되는 2017년의 다음해인 2018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안 제5조, 제6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를 위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및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키운 자를 법조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법과전문대학원의 존립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인 당해 법과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로 함.

(2)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 제6조의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를 예비시험의 응시결격사유로도 정함.

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 또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졸업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비시험합격자는 법과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차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함.

마. 시험의 방법(안 제8조)

예비시험에서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과목,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예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법과전문대학원의 실행과정을 보고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예비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시험과목의 신설·폐지 또는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둠.

바. 시험의 합격 결정(안 제10조)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함.

사. 변호사시험법의 시험의 개념에 예비시험을 일부 포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변호사시험법에서의 시험의 개념에서 예비시험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예비시험도 포함하여 규율함.

아. 부칙 중 변호사시험 및 예비시험을 함께 규율해야 하는 부분에 예비시험 추가(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부정시험자로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변호사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및 예비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시험”을 “시험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시험”을 “시험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하여야 한다.”를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득하기 전”을 “취득하기 전 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기 전”으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을 “시험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5회만”을 “5회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 3회만”으로 한다.

안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비시험에서의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과목, 구분별·과목별 합격 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예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시험과목의 신설·폐지 또는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법학전문대학원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시험”을 “시험(예비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시험·예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12년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예비시험은 2018년 이후에 시행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4조 제목 중 “사법시험”을 “사법시험·예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차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안 부칙 제5조 중 “시험에”를 “시험 및 예비시험에”로 한다.

안 부칙 제6조 전단 중 “시험의”를 “시험 및 예비시험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 ----- -----교육과정 및 예비시험-----.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 및 예비시험-----.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및 예비시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격) ①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취득하기 전 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기 전-----.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시험 및 예비시험-----.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5회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 3회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험의 방법) ① ~ ⑤ (생략)	제8조(시험의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예비시험에서의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과목, 구분별·과목별 합격 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예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시험과목의 신설·폐지 또는 시험과목의 출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p> <p>②·③ (생략)</p> <p>부칙</p> <p>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p> <p>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 ③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p>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및 예비시험-----.</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예비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같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3조(변호사시험·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12년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예비시험은 2018년 이후에 시행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사법시험·예비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차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 ----- -----시험 및 예비시험에-----.</p> <p>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 -----시험 및 예비시험의 --.</p>
---	---

<자료 3> 일본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1949년 법률 제140호)

최종 개정 :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목차

- 제1장 사법시험 등 (제1조—제11조)
- 제2장 사법시험위원회 (제12조—제16조)
- 제3장 보칙 (제17조)
- 부칙

제1장 사법시험 등

(사법시험의 목적 등)

- 제1조 사법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으로 한다.
- 2. 재판소법 (1947년 법률 제59호) 제66조의 시험은, 이 법률에 의해 시행한다.
- 3. 사법시험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과대학원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래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법시험의 방법 등)

- 제2조 사법시험은, 단답식(택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의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 2. 사법시험 합격자의 판정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법시험의 시험과목 등)

- 제3조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적인 추론 능력을 가지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과목에 관해 시행한다.
  - 가. 공법계과목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 나. 민사계과목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
  - 다. 형사계과목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 2.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학식과 법적인 분석, 구성 및 논술의 능력을 가지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과목에 관해 시행한다.
  - 가. 공법계과목
  - 나. 민사계과목

다. 형사계과목

라. 전문적인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과목 중 수험자가 미리 선택하는 1과목

3. 전2항에 열거하는 시험과목에 관해, 법무성령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사법시험에서는, 그 수험자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식을 가지는가의 관정에 편중됨이 없이, 법률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등의 관정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법시험의 수험자격 등)

제4조 사법시험은, 아래의 각호에 열거하는 자가,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3회의 범위 내에서 수험할 수 있다.

가. 법과대학원 (학교교육법 (1947년 법률 제26호)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직대학원이며, 법조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의 과정(다음 항에서 「법과대학원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그 수료일 이후 최초의 4월 1일부터 5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나. 사법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그 합격 발표일 이후 최초의 4월 1일부터 5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법시험을 수험한 자는, 그 수험에 관한 수험자격(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과대학원과정의 수료 또는 사법시험예비시험의 합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수험기간(전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은, 다른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수험한 날 이후 최초의 4월 1일부터 2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수험에 관한 수험자격에 대응하는 수험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또한 같다.

(사법시험예비시험)

제5조 사법시험예비시험 (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사법시험을 수험하고자 하는 자가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자와 동등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단답식과 논문식에 의한 필기 및 구술의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2.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아래에 열거하는 과목에 관해 시행한다.

가. 헌법

나. 행정법

다. 민법

라. 상법

마. 민사소송법

바. 형법

사. 형사소송법

자. 일반교양과목

3.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아래에 열거하는 과목에 관해 시행한다.

1. 전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과목
2. 법률실무기초과목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 (실무의 경험에 의해 수득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4. 구술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법적인 추론, 분석 및 구성에 기초하여 변론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가의 판정에 유의하여, 법률실무기초과목에 관해 시행한다.
5. 전3항에 규정하는 시험과목에 관해서는, 법무성령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사법시험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6조 법무대신은, 제3조 제2항 제4호 혹은 제3항 또는 전조 제5항의 법무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하는 때는, 사법시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법시험 등의 실시)

제7조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은, 각각 사법시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일 및 장소는 미리 관보로 공고한다.

(합격자의 결정방법)

제8조 사법시험의 합격자는 사법시험고사위원의 합의에 의한 판정에 기초하여, 예비시험의 합격자는 사법시험예비시험고사위원의 합의에 의한 판정에 기초하여, 각각 사법시험위원회가 결정한다.

(합격증서)

제9조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당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합격의 취소 등)

제10조 사법시험위원회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사법시험 혹은 예비시험을 수험하거나, 수험하려고 한 자 또는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기초하는 법무성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수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합격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상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법시험 혹은 예비시험을 수험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수험수수료)

제11조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을 수험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당해 시험을 수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제2장 사법시험위원회

(사법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12조 법무성에, 사법시험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아래에 열거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가.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을 시행하는 것

나.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조사·심의하는 것

다.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법무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

라. 기타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

3.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공사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제13조 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한다.

2. 위원은,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5.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제14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회는, 미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에게 유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을 대리할 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사법시험고사위원 등)

제15조 위원회에, 사법시험의 문제 작성과 채점 및 합격자의 판정을 행하게 하기 위해 사법시험고사위원을 두고, 예비시험의 문제 작성과 채점 및 합격자의 판정을 행하게 하기 위해 사법시험예비시험고사위원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예비시험고사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사법시험고사위원 및 예비시험고사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당해 시험을 시행하는 데 관해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시험마다 임명한다.
3. 사법시험고사위원 및 예비시험고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6조 제12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위원, 사법시험고사위원 및 예비시험고사위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보칙

(법무성령에의 위임)

제17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 「변호사시험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2009년 5월 27일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sup>1)</sup>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 1. 합격결정 방법 (「시행령안」 제8조 제4항 관련)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협의회는, 법 제정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sup>2)</sup>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합격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제8조 제4항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또 다시 법무부령에 위임하려고 하고 있음.
-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법무부공고 제2009-83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9.5.27 ; 「변호사시험법률 시행령안, 2009.5.27 (http://www.moj.go.kr/-공지사항).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 따라서, 「시행령안」에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 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sup>3)</sup>라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2.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시행령안」 별표 1 관련)

- 「시행령안」 별표 1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것은 일본 신사법시험의 논문식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경제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환경법”<sup>4)</sup> 중 “도산법”을 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서, “도산법”은 뺀 것은 설득력이 없음. 일본의 경우 2009년 신사법시험에서 도산법을 선택한 출원자는 2,339명(24%)로 노동법을 선택한 출원자 3,077(31.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sup>5)</sup>
- 뿐만아니라, 위의 「시행령안」의 내용은, 법무부가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 필수과목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sup>6)</sup>라고 한 것과는 부합되지 않음.
- 「시행령안」처럼 선택과목을 극소수의 과목으로 한정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이들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임.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안]」, 2008.11.3.

4) 「答申 (平成18年から実施される司法試験における論文式による筆記試験の科目(専門的な法律の分野に関する科目)の選定について)」(<http://www.moj.go.jp/SHINGI/SHIHOU/040803-1.pdf>).

5) 「平成21年新司法試験の出願状況について」(<http://www.moj.go.jp/SHIKEN/SHINSHIHOU/h21-19jisshi.pdf>).

6)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해설자료」, 2008.10.

- 선택과목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인 이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들을 대폭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

### 3.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시행령안」 별표 3 관련)

- 「시행령안」 별표 3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즉,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1:2로 하겠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비중이 시험 실시 첫 해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4<sup>7)</sup>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1:8<sup>8)</sup>로 수정되었음.
- 일본의 경우 합격자수를 법과대학원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합격률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 논문식시험의 채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우리의 경우 총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택형 필기시험의 의미는 일본에서와 같은 정도도 인정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 제9조에 따라, 사실상 현행의 사법시험에서는 치르지 않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 선택형 시험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7) 「新司法試験における採点及び成績評価等の実施方法・基準について」, 2005.11.16 (<http://www.moj.go.jp/SHIKEN/SHINSHIHOU/h20-13jisshi.pdf>).

8) 「新司法試験における採点及び成績評価等の実施方法・基準について」, 2009.1.21 (<http://www.moj.go.jp/SHIKEN/SHINSHIHOU/h21-18jisshi.pdf>).

- 따라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은, 적어도 일본 신사법시험의 수준(1:8) 이하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 4.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행령안」 별표 4의 3 관련)

- 「시행령안」 별표 4의 3에서는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이것은 법조윤리시험의 운용 여하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통상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최저점인 ‘만점의 6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9년 6월 22일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6-1 대우디오슈페리움 C동 3층
전화	02) 888-2035

---